

대전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1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1774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12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김동술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정재현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12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1, 15, 16, 17,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5. 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7. 5. 4. 접수 제92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5. 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7. 5. 23. 접수 제104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그리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1) 원고는 2018. 2. 19.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서울 성동구 H아파트, I호’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부분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장 부분은 2018. 9.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9. 4. 10.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9. 5. 15.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 판결정본은 2019. 5.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3) 피고는 2020. 6. 23. 원고가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2933 사해행위취소)에서 제1심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7.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망 C(2018. 6.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14. 기준 136,655,29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망인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7.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 및 증여하여 같은 달 4일과 23일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피고는, 망인이 약 300억 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위 계약으로 무자력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혹은 위 계약으로 인해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아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별지